



레미콘트럭安全管理(VII) –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제도 –

송 남 기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 강사〉

目

- 1. 서 론
- 2. 본 론
 - 2. 1 적성검사제도
 - 2. 2 적성검사의 종류

次

- 2. 3 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
- 2. 4 적성검사 미필과 무면허운전
- 3. 결 론

1. 서 론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이하여 문명의 이기이며 현대사회에서 가장 편리한 도구인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91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4,247,816대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22.2%였으며 운전면허소지자는 9,844,356명으로 16.2%가 증가하였다.¹⁾

이러한 통계는 자동차 1대당 2명의 운전면허소지자가 있으며 4인 기준으로 1가족이라고 했을 때 1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마이카시대의 추세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게 될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운전면허소지자가 정기적인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운전하다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92년 3월 15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정지와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다시 말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한번 교부받은 것으로 평생토록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적성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 운전을 할 수 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정기적 성검사

1) 경찰청, 1992년판 교통사고 통계, 서울 : 경찰청, 1992. pp.4~5.

기간을 잘 알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성검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2. 1 적성검사제도

도로교통법 제74조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찰하는 시·도 지방청장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앞을 보지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앓은 사람,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할 수 있으며 수시적성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검사받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²⁾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운전이란 자동차라는 기계를 도로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작할만한 신체적 구조 즉 적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무리 도로교통이나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행정청에서는 운전면허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이 우선 당해 운전면허에 관하여 신체적 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적성검사는 최초로 운전면허를 부여 할 때 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면허를 부여받았던 사람이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후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신체적 적성의 변화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시 적성검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법으로서 제도화한 것이 적성검사제도이다.

2. 2 적성검사의 종류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가 있다.

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적성변화 여부를 일일히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적성검사를 받게하는 정기 적성검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2. 1 정기 적성검사

1) 정기 적성검사의 대상

도로교통법 제74조 제1항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찰하는 시·도 지방 경찰청장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모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1종면허, 제2종면허,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적성검사의 시기

정기적성검사는 정기적으로 적성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를 처음으로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의 본인의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 운전면허는 매 3년, 제2종 운전면허는 매 5년이 되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찰하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지방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은 결과 적성기준에 맞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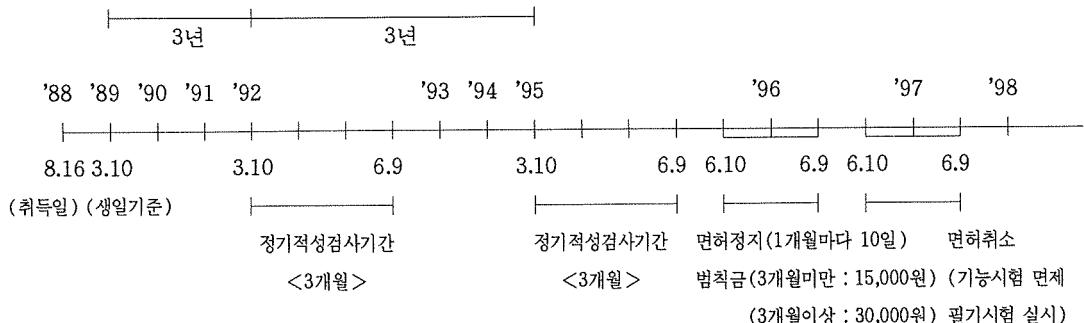
2) 치안본부(경찰청), 1990년판 도로교통관계 법령집, 서울 : 치안본부, pp.113~114



[예 1] 면허종류 : 1종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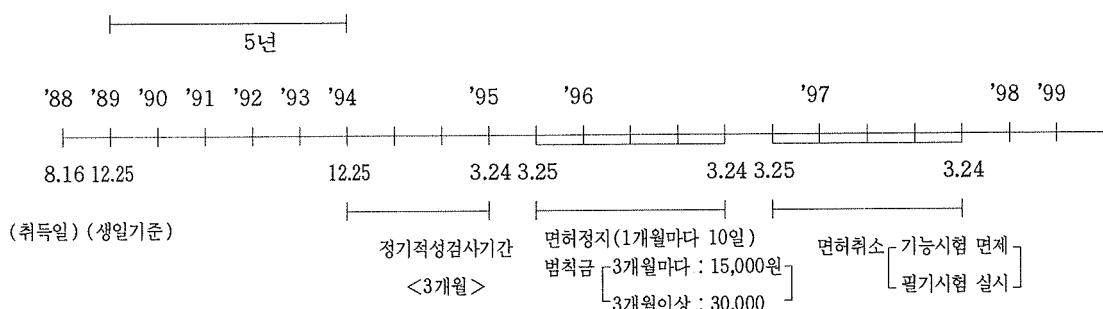
최초 면허증 교부일 : 1988. 8. 16.

출생일 : 3월 10일



[예 2] 면허종류 : 2종 보통

출생일 : 12월 25일



이러한 제도는 1985년 2월 5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일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1]의 경우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다음 해로부터 제1종 운전 면허는 매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92년 3월 10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92년 6월 9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적성검사 지정 병원에서 적성 검사를 받은 후 주소지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허증을 갱신, 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예 2]의 경우에는 생일이 12월 25일이 되어 '94년 12월 25일에서 다음 해인 '95년 3월 24일 사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3)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중 (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된 후 전투경찰, 순경, 또는 경비교도 대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한다)이거나 사회 관습상 부득이한 자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2. 2 수시 적성검사

1) 수시적성검사의 대상

수시적성검사는 이미 설명한 정기적성검사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적성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정신병자, 정신 미약자, 간질병자

이러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 그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거나, 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앓은 사람,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앓아 있을 수 없는 사람

③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2) 수시적성검사의 실시

수시적성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경찰청장은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경찰청장은 수시적성검사 결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불인 때에는 조건부과 통지서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조건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 경찰청장은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본인에게 통지한 내용을 수시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2. 3 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정기적성검사는 물론 수시적성검사에 대하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납부 통고처분과 운전면허 정지 내지 취소의 법적 제재조치가 따른다.

2. 3. 1 범칙금납부 통고처분

적성검사기간이 3개월 미만 지난 경우에는 15,000원, 3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30,000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는다.

2. 3. 2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92년 3월 15일부터 도로교통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즉 '92년 3월 14일까지는 적성검사기간에 관계없이 지났다고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적성검사기간이 지난것이 사소한 부주의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지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별점을 부과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즉 지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점의 별점을 부과하며 1월 초과할 때마다 10점씩 가산하여 120점까지 별점을 부과하고 이러한 별점 1점을 정지기간 1일로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규에 따르면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경우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받으면 필기와 기능시



험을 면제하고 운전면허증을 신규로 갱신·발급하였다.

도로교통법에서 다른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도 다시 보아야 하지만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에 비하여 '92년 3월 15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성검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적성검사만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적성검사기간이 지난 날에 비례하여 10일에서 120일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이 경우에도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성 검사를 받으면 운전 면허증을 갱신·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코스와 주행시험)만 면제받고 필기시험(자동차 구조, 교통법령의 학과시험)은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 정지를 받으면 다른 법규 위반이나 사고 야기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가 30점 이상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집행되는 것과는 다르게 10점 부터 집행되며 이 점수는 또한 누산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4 적성검사 미필과 무면허운전

정기적성검사는 운전 경력이 많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 기간을 넘기기가 쉬웠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관심이 없어서 또는 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어 운전 면허증을 꺼내 볼 필요가 없어서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기게 되어 교통단속이나 검문에 의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즉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경찰측에서는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리하므로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일로 부터 2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초래되어 많은 민원이나 소송이 제기되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의 운전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해석하여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취소통지 절차의 하자를 지적한 판례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관할 행정청(지방 경찰청)에서는 당해 운전자에게 취소통지를 하는데 이러한 취소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주소지로 통지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체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였다(1989. 3. 28. 선고 88도 1738, 1991. 3. 22. 선고 91도 233판결, 1991. 11. 18. 선고 91누 2588판결 등).

즉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의 주소지에 취소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당해 운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반송되는 등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계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도록 도로교통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해 운전자가 주소를 변경함에 있어 적법한 주소변경 신고 절차를 마쳤음에도 행정청에서 구주소지로 통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취소통지를 한 주소지에 엄연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취소통지서가 반송되어 경찰관서 계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취소통지에 갈음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취소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관할 행정청에서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있기 까지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② 면허발급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위와 같이 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적법한 취소통지나 공고 절차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운전자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이를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외에 적법한 통지나 공고 절차를 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수한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간 운전면허 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1991. 11. 8. 선고 91누2588)이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취소통지 내지 공고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 당해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취소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러한 취소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기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통지나 공고 절차가 취하여져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 제도의 규정 취지, 적성검사 미필은 단순한 부주의로 쉽게 발생되는 위반 사유이고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는데는 신체검사 이외에 기능, 법령, 구조 등 일체의 면허시험에 면제되는 점, 도로교통법 제40조에서의 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후 운전 뿐만 아니라 정지된 기간중의 운전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2년간 운전면허 부여 제한규정인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후의 운전은 순수한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 단서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2년간 면허발급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모른 채 다시 말하면, 취소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부적법한 통지나 공고 절차를 한 경우는 물론 적법한 통지나 공고 절차를 하였더라도 순수한 무면허 운전과는 달리 2년간 면허 발급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들은 1992년 3월 14일 도로교통법규를 개정하기 전에 나온 것들로서 도로교통법규는 적성검사 미필자에 대한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후의 운전자에 대하여 2년간 면허 발급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운전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정기적성검사제도는 귀찮고 무익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와 동일한 신체적 적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운전에 대한 신체적 적성이 변화하고 나아가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로 된 운전자가 생길 경우 다른 운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들은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신체적으로도 적성 미필이 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앞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 중 통지 절차의 하자를 지적한 판례는 비단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있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 만큼 참고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소 변경 사실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겠다.

참고로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양식과 주소지 변경등 기재사항 변경시에 필요한 양식을 첨부하였다.



담당	장장

(별지 제35호 서식)

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성명	한글	한문	② 주민등록번호										
소지하고 있는	③ 주소													
	면허종류	1 종				2 종				⑤ 주소지 경찰서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보통	소형	특수	원자					
		1	2	3	4	5	6	7	8					
	⑥ 면허번호													
	⑦ 면허교부일자	19 □.□.□			⑧ 유효기간					19. □.□.□				
	⑨ 접수일자	19 □.□.□			⑩ 접수번호									
	신체검사 결과	⑪ 시력	양안			⑫ 색채식별			⑬ 시야 (150도이상)			⑭ 청력		
			우											
좌														
사지운동	상지	우좌			적·부	하지	우좌			적·부	⑮ 청·력	적·부		
	기타										적·부			
의사의소견											판정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19 . . .														
병원														
의사 ⑯														
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⑰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자료표1부 2. 사진2매(소명함판) 3. 면허증 4. 정밀신체검사서(수시검사에만)										수수료			
유의사항	1.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의 6자리숫자에 생년월일만 기입한다. 2. 면허종류란에는 현재소지하고 있는 면허해당란에 ○ 표를 한다.										(수입증지첨부)			

2106-119B(1)

190mm×268mm 노카본지 56g/m²

담당	면허계장

처리기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신청인	① 성명	한글	한문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구주소				주소지경찰서							
소유자하고는	④ 면허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⑤ 면허교부일자	<input type="text"/>		⑥ 유효기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변경내용	⑦ 접수일자	<input type="text"/>		⑧ 접수번호								
	⑨ 성명	한글	한문	⑩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⑪ 현주소						주소지경찰서코드	<input type="text"/>				
	⑫ 국적						국적코드	<input type="text"/>				

년 월 일

신고자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기재요령	1.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전단의 6자리에 생년월일만 기입합니다. 2. 변경내용은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지도 조례에 의함.

2106-120민(2)

85. 1. 28승인